

학교법인 순효학원

(2018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)

구 분	이 사	감 사
이사정수	7인	2인
재적임원	7인	2인
참석임원	7인	0인

1. 일 시 : 2018년 03월 30일(금) 11:00~11:30(회의소집 통보일 : 2018년 03월 19일)

2. 장 소 : 학교법인 순효학원 이사장실

3. 임원 출결 사항

● 참석 임원

- 이사(7인) : 장인원, 강성락, 조성극, 박용진, 한주섭, 변학환, 김관유

● 결석 임원

- 이사(0인) : -

4. 회의안건

가. 신안산대학교 상반기(2018.04.01) 교원승진 임용대상자 심의

나. 신안산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심의

다. 신안산대학교 규정 심의

5. 회의내용

▣ 제1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상반기(2018.04.01) 교원승진 임용대상자 심의

의 결 사 항

▶ 2018년도 상반기(04.01) 교원승진 임용자 명단

임면구분	직 위	성 명	생년월일	계열	학 과	임면일자	임면 종료일	국적
승진	교수	***	**.*.*.**	인문사회	*****	18-04-01	22-08-31	한국
	교수	***	**.*.*.**	인문사회	*****	18-04-01	22-02-28	한국

■ 제2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심의

의 결 사 항

■ 신안산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

소속	직위	성명	생년월일	임용일	명예퇴직일	정년퇴직일	비고
*****	***	***	**,**,**	**,**,**	**,**,**	**,**,**	-

■ 제3호 안건 신안산대학교 규정 심의

의 결 사 항

■ 신안산대학교 제 규정 내역

구분	규정명	입안 일자	주요내용	담당부서
개정	직원인사 규정	2018. 03.19	직원 채용에 있어서 제11조 임용의 원칙 제①항의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함.	사무처
	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	2018. 03.19	법인의 정관 제42조의 2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함.	교무 입학처

㉠ 직원인사 규정 (신구대조표)

현 행	개 정
제11조 (임용의 원칙)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<u>부득이한 경우</u>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	제11조 (임용의 원칙)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<u>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</u>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② 공개채용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, 면접 등으로 할 수 있다.	② 공개채용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, 면접 등으로 할 수 있다.

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(순효학원 정관 제42조의 2와 일치하고자 개정)

▣ 순효학원 정관

제42조의 2 (정년보장교원의 정수)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법정전임 교원의 12% 이내로 한다. (개정 2018.02.02)